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230호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9호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9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막역) ..... 69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71호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1단계)] 공사완료 공고 ..... 7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7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7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01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7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03호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지범지구) 계획(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7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1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28호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2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7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 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8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41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8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42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84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5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7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8호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1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9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18

회 람									
--------	--	--	--	--	--	--	--	--	--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6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61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3호 공인등록 공고(지역교권보호위원회) ..... 162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6호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4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과(☎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8.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k㎡)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 일원	67.296	감)0.021	67.275	

###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k㎡)	변경사유
변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 일원	0.021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8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8.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74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수탁 처리업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74일원	1,434	증)1,839	3,27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17호 (2015. 5.26.)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질오염 방지시설	○ 면적 증가 - 위치: 석남동 223-274번지 일원 - 면적: 1,434m <sup>2</sup> → 3,273m <sup>2</sup> (증) 1,839m <sup>2</sup>	○ 수질오염방지시설 현대화, 폐수 처리방법 개선, 직원 휴게·복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한 부지 확장

###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89호

##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61호(2024. 3. 19.)로 고시한 계양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 확인되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032-440-4674)와 계양구 공영개발과(032-450-56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5.

인천광역시장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계양산업단지

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다. 면적: (기정) 243,086 → (변경) 243,082.6㎡

###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既 조성완료된 서운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최적의 입지를 갖춘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 인천시 관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및 수도권 기업입지난 해소를 통한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천 계양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계양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주소: 인천광역시 계산새로 8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24년 12월

(변경)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26년 12월

나. 개발방법: 공영개발

##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분류
제조업 (C)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업종코드	업종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2,728	감 1,474	131,254	100.0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719	감 246	25,473	19.4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834	감 306	20,528	15.7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000	감 119	5,881	4.5	
C28	전기장비 제조업	14,327	감 50	14,277	10.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665	감 284	27,381	20.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684	감 56	5,628	4.3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84	감 28	2,056	1.6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480	감 28	4,452	3.4	
	중소기업전용단지 주 <sup>1)</sup>	13,935	감 188	13,747	10.4	
	지식산업센터 주 <sup>2)</sup>	12,000	감 169	11,831	9.0	

주1) 제시된 8개 업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기타 제품 제조업

주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가능 시설중 본 지구단위계획 산업1-2(산업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의 허용용도

## 다. 입주 제한업종 (변경, 오염 유발업종 8개 추가제한)

구분	입주제한
대기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업체</li> </ul>
악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li> <li>○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2조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 10OU를 초과하는 배출업체</li> </ul>
수질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li> <li>○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 업체</li> </ul>
폐기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업체</li> </ul>
기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업체</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제조업체</li> <li>○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2항4호에 의한 제한사항임</li> </ul> </li>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2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업체(중소기업전용단지에 한함)</li> </ul>

중분류	입주제한 업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업(25922)</li> <li>○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li> </ul>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li> <li>○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li> <li>○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li> <li>○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4)</li> </ul>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무·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li> <li>○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li> </ul>

\* 입주 제한업종 중 입주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 가능

##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전, 답, 도로, 과수원, 구거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과	구	답	도	전	천
기정	면 적(m <sup>2</sup> )	243,086	10,454.0	8,108.6	57,646.5	23,109.8	143,747.1	20.0
	구성비(%)	100.0	4.3	3.3	23.7	9.5	59.1	0.1
변경	면 적(m <sup>2</sup> )	243,082.6	10,454.0	8,117.0	57,737.0	23,025.7	143,728.9	20.0
	구성비(%)	100.0	4.3	3.3	23.7	9.5	59.1	0.1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용도지역계획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43,086	감) 3.4	243,082.6	100.0	
도 시 지 역	소 계	243,086	감) 3.4	243,082.6	100.0	
	일반공업지역	227,489	감) 3.4	227,485.6	93.6	
	준공업지역	15,597	-	15,597	6.4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43,086	감) 3.4	243,082.6	100.0	
산업시설용지	132,728	감) 1,474	131,254	54.0	
지원시설용지	11,199	감) 334	10,865	4.5	
공공시설용지	99,159	증) 1,804.6	100,963.6	41.5	
도로	35,804	증) 2,327.6	38,131.6	15.7	
주차장	3,765	감) 173	3,592	1.5	2개소
공원	10,432	감) 136	10,296	4.2	1개소
녹지	42,808	감) 214	42,594	17.5	
유수지	4,350		4,350	1.8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2,000		2,000	0.8	1개소

##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명	주요내용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도로	10개 노선 (2,201m)	중로(5개노선): 1,689m 소로(5개노선): 512m	중로(5개노선): 1,682m 소로(5개노선): 509.5m	
주차장	2개소	3,765	3,592	
공원	1개소	10,432	10,296	근린공원
녹지	7개소	42,808	42,594	경관녹지
유수지	1개소	4,350	4,350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2,000	2,000	

## 1) 도로계획

##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10	2,201 (2,264)	35,804 (36,286)	2	472 (535)	10,440 (11,922)	8	1,729	25,364	-	-	-
중로	5	1,689 (1,752)	31,570 (32,052)	1	366 (429)	9,446 (10,928)	4	1,323	22,124	-	-	-
소로	5	512	4,234	1	106	994	4	406	3,240	-	-	-

주1) ( )안은 지구외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10	2,191.5 (2,254.5)	38,131.6 (39,613.6)	2	471.5 (534.5)	12,023.6 (13,505.6)	8	1,720	26,108	-	-	-
중로	5	1,682 (1,745)	33,912.6 (35,394.6)	1	366 (429)	11,028.6 (12,510.6)	4	1,316	22,884	-	-	-
소로	5	509.5	4,219	1	105.5	995	4	404	3,224	-	-	-

주1) ( )안은 지구외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0개 노선				-	2,191.5 (2,254.5)	-	-	-		
소계	중로	5개 노선			-	1,682 (1,745)	-	-	-		
기정	중로	1	657	23.5~30	보조 간선도로	366 (429)	광3-9 병방동243-2	중1-656 서운동101-11	일반 도로	'16.03.21 (인고 제2016-43)	
변경	중로	1	657	23.5~33	보조 간선도로	366 (429)	광3-9 병방동243-2	중1-656 서운동101-1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48	16	국지 도로	334	중1-657 병방동441-1	중3-140 병방동278	일반 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48	17	국지 도로	332.5	중1-657 병방동441-5	중3-140 병방동2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49	16	국지 도로	401	중1-657 병방동441-1	중2-948 병방동277	일반 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49	17	국지 도로	399.5	중1-657 병방동441-5	중2-948 병방동27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50	16	국지 도로	137	중2-949 병방동256-1	중2-948 병방동262-2	일반 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50	17	국지 도로	136	중2-949 병방동256-1	중2-948 병방동262-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51	16	국지 도로	451	중1-657 병방동441-2	중1-657 병방동441-2	일반 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51	17	국지 도로	448	중1-657 병방동441-6	중1-657 병방동441-2	일반 도로	-	
소계	소로	5개 노선			-	509.5	-				
기정	소로	1	91	10	국지 도로	106	중2-951 병방동251-1	병방동267-9	일반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1	91	10	국지 도로	105.5	중2-951 병방동251-1	병방동267-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6	8	특수 도로	131	중2-949 병방동276	병방동 240-1	보행자 전용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6	8	특수 도로	130.5	중2-949 병방동276	병방동 240-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	8	특수 도로	90	중2-949 병방동261-1	중로3-140 병방동 219-7	보행자 전용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7	8	특수 도로	89.5	중2-949 병방동261-1	중로3-140 병방동 219-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	8	특수 도로	105	소2-108 병방동276	병방동 281-5	보행자 전용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8	8	특수 도로	104.5	소2-108 병방동276	병방동 281-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9	8	특수 도로	80	소2-109 병방동251-1	병방동 245-2	보행자 전용도로	'23.04.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9	8	특수 도로	79.5	소2-109 병방동251-1	병방동 245-10	보행자 전용도로	-	

주) ( )안은 전체 도로 연장 중 지구외 도로 연장임

##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3,765	감) 173	3,529		
변경	1	주차장	병방동 261-2번지 일원	2,884	감) 100	2,784	'23. 4. 10. (인고제2023-78호)	-
변경	2	주차장	병방동 251-1번지 일원	881	감) 73	808	'23. 4. 10. (인고제2023-78호)	-

## 3)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432	감) 136	10,296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병방동 243-3번지 일원	10,432	감) 136	10,296	'23. 4. 10. (인고제2023-78호)	

## 4)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개소	42,808	감) 214	42,594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40-6번지 일원	10,758	감) 93	10,665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39-5번지 일원	6,051	감) 26	6,025	'23. 4. 10. (인고제2023-78호)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60-1번지 일원	1,295	-	1,295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9번지 일원	4,054	증) 8	4,062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1번지 일원	4,964	감) 37	4,927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0-1번지 일원	6,513	감) 37	6,476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45-3번지 일원	9,173	감) 29	9,144	'23. 4. 10. (인고제2023-78호)	

## 5) 우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병방동 267-2번지 일원	4,350	-	4,350	'23. 4. 10. (인고제2023-78호)	

## 6)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병방동 249-3번지 일원	2,000	-	2,000	'23. 4. 10. (인고제2023-78호)	

라. 전력: 산업시설용지가 31,979MWH/년,  
지원·공공시설용지가 14,875MWH/년으로 전망하고,  
향후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토록 함

마. 에너지 공급계획: 인천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바. 통신시설: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병방동 249-3번지 일원	2,000	-	2,000	'23. 4. 10. (인고제2023-78호)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43,086	감) 3.4	243,082.6	100.0		
도 시 지 역	공 업 지 역	소 계	243,086	감) 3.4	243,082.6	100.0	
		일반공업지역	227,489	감) 3.4	227,489	93.6	
		준공업지역	15,597	-	15,597	6.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계양구 계산동 외 19동 일원	243,082.6 (29,835,381)	'94. 9. 10. (인고제151호)	지구 전체 해당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계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병방동 255-2 일원	243,086	증) 3.4	243,082.6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① 도로시설 총괄표(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10	2,191.5 (2,254.5)	38,131.6 (39,613.6)	2	471.5 (534.5)	12,023.6 (13,505.6)	8	1,720	26,108	-	-	-
중로	5	1,682 (1,745)	33,912.6 (35,394.6)	1	366 (429)	11,028.6 (12,510.6)	4	1,316	22,884	-	-	-
소로	5	509.5	4,219	1	105.5	995	4	404	3,224	-	-	-

주1) ( )안은 지구의 도로

##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0개 노선				-	2,191.5 (2,254.5)	-	-	-		
소계	중로	5개 노선			-	1,682 (1,745)	-	-	-		
기정	중로	1	657	23.5 ~30	보조 간선도로	366 (429)	광3-9 병방동243-2	중1-656 서운동101-11	일반 도로	'16. 3. 21. (인고 제2016-43)	
변경	중로	1	657	23.5 ~33	보조 간선도로	366 (429)	광3-9 병방동243-2	중1-656 서운동101-1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48	16	국지 도로	334	중1-657 병방동441-1	중3-140 병방동278	일반 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48	17	국지 도로	332.5	중1-657 병방동441-5	중3-140 병방동2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49	16	국지 도로	401	중1-657 병방동441-1	중2-948 병방동277	일반 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49	17	국지 도로	399.5	중1-657 병방동441-5	중2-948 병방동27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50	16	국지 도로	137	중2-949 병방동256-1	중2-948 병방동262-2	일반 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50	17	국지 도로	136	중2-949 병방동256-1	중2-948 병방동262-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951	16	국지 도로	451	중1-657 병방동441-2	중1-657 병방동441-2	일반 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중로	2	951	17	국지 도로	448	중1-657 병방동441-6	중1-657 병방동441-6	일반 도로	-	
소계	소로	5개 노선			-	509.5	-				
기정	소로	1	91	10	국지 도로	106	중2-951 병방동251-1	병방동267-9	일반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1	91	10	국지 도로	105.5	중2-951 병방동251-1	병방동267-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6	8	특수 도로	131	중2-949 병방동276	병방동 240-1	보행자 전용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6	8	특수 도로	130.5	중2-949 병방동276	병방동 240-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	8	특수 도로	90	중2-949 병방동261-1	중로3-140 병방동 219-7	보행자 전용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7	8	특수 도로	89.5	중2-949 병방동261-1	중로3-140 병방동 219-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	8	특수 도로	105	소2-108 병방동276	병방동 281-5	보행자 전용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8	8	특수 도로	104.5	소2-108 병방동276	병방동 281-5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9	8	특수 도로	80	소2-109 병방동251-1	병방동 245-2	보행자 전용도로	'23. 4. 10. (인고 제2023-78)	
변경	소로	2	109	8	특수 도로	79.5	소2-109 병방동251-1	병방동 245-10	보행자 전용도로	-	

주) ( )안은 전체 도로 연장 중 지구외 도로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657	중로1-657	· 폭원 확폭 : B=23.5~30m→23.5~33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중로2-948	중로2-948	· 폭원 확폭 : B=16m→17m · 연장 축소 : L=334m→332.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중로2-949	중로2-949	· 폭원 확폭 : B=16m→17m · 연장 축소 : L=401m→399.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중로2-950	중로2-950	· 폭원 확폭 : B=16m→17m · 연장 축소 : L=137m→136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중로2-951	중로2-951	· 폭원 확폭 : B=16m→17m · 연장 축소 : L=451m→448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소로1-91	소로1-91	· 연장 축소 : L=106m→105.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연장 축소
소로2-106	소로2-106	· 연장 축소 : L=131m→130.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연장 축소
소로2-107	소로2-107	· 연장 축소 : L=90m→89.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연장 축소
소로2-108	소로2-108	· 연장 축소 : L=105m→104.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연장 축소
소로2-109	소로2-109	· 연장 축소 : L=80m→79.5m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연장 축소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3,765	감) 173	3,529		
변경	1	주차장	병방동 261-2번지 일원	2,884	감) 100	2,784	'23. 4. 10. (인고제2023-78호)	-
변경	2	주차장	병방동 251-1번지 일원	881	감) 73	808	'23. 4. 10. (인고제2023-78호)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면적 변경 · 면적 : 2,884㎡ → 2,784㎡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토지이용 계획 변경
2	주차장	- 면적 변경 · 면적 : 881㎡ → 808㎡	

## 2) 공간시설

## 가) 공원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0,432	감) 136	10,296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병방동 243-3번지 일원	10,432	감) 136	10,296	'23. 4. 10. (인고제2023-78호)	

※ (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10,432㎡ → 10,296㎡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나) 녹지

## ■ 녹지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합계	7	42,808	7	42,594	
경관녹지	7	42,808	7	42,594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42,808	감) 214	42,594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40-6번지 일원	10,758	감) 93	10,665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39-5번지 일원	6,051	감) 26	6,025	'23. 4. 10. (인고제2023-78호)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60-1번지 일원	1,295	-	1,295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9번지 일원	4,054	증) 8	4,062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1번지 일원	4,964	감) 37	4,927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70-1번지 일원	6,513	감) 37	6,476	'23. 4. 10. (인고제2023-78호)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병방동 245-3번지 일원	9,173	감) 29	9,144	'23. 4. 10. (인고제2023-78호)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10,758m <sup>2</sup> → 10,655m <sup>2</sup>	· 산업단지 내 이용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6,051m <sup>2</sup> → 6,025m <sup>2</sup>	
4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4,054m <sup>2</sup> → 4,062m <sup>2</sup>	
5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4,964m <sup>2</sup> → 4,927m <sup>2</sup>	
6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6,513m <sup>2</sup> → 6,476m <sup>2</sup>	
7	녹지	- 면적 변경 · 면적 : 9,173m <sup>2</sup> → 9,144m <sup>2</sup>	

## 3) 방재시설

## 가) 유수지

##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50	-	4,35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병방동 267-2번지 일원	4,350	-	4,350	'23. 4. 10. (인고제2023-78호)	

## 4) 환경기초시설

##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000	-	2,000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병방동 249-3번지 일원	2,000	-	2,000	'23. 4. 10. (인고제2023-78호)	

##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계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243,086	증) 3.4	243,082.6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	
합계		132,728	감) 1,474	131,254	-	-	
산업	산업1	17,574	감) 164	17,4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획지 : 1,650㎡</li> <li>· 최대획지 : 제한없음</li> <li>·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획지분할 가능 선으로 획지 분할 가능</li> </ul>
	산업2	12,160	감) 76	12,084	-	-	
	산업3	10,164	감) 83	10,081	-	-	
	산업4	12,612	감) 195	12,417	-	-	
	산업5	8,528	감) 47	8,481	-	-	
	산업6	17,191	감) 200	16,991	-	-	
	산업7	16,356	감) 144	16,212	-	-	
	산업8	10,478	감) 280	10,198	-	-	
	산업9	18,737	감) 220	18,517	-	-	
	산업10	8,928	감) 65	8,863	-	-	

## ②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m <sup>2</sup> )	
합 계		11,199	감) 334	10,865	-	-	
지원	지원1	11,199	감) 334	10,865	-	-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상의 획지분할가능선으 로 획지 분할 가능

## ③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m <sup>2</sup> )	
합 계		3,765	감) 173	3,592	-	3,592	
주	주차장1	2,884	감) 100	2,784	1	2,784	
	주차장2	881	감) 73	808	2	80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1 산업2-1 산업3 산업4-2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시설 용지)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li> <li>-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li> <li>-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제조업)</li> <li>- C28(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기타 기계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li>-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li>-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li>- C33(기타제품 제조업)</li> </ul> </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mall>참고3</small></li> </ul>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총 수 (높 이)	• 5층 이하 (45m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단, 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 녹화,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li> <li>• 불연재 사용 권장</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 축 선	-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1-2 (산업시설 용지) ※지식산 업센터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가능 시설 중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sup>참고1</sup>, 정보통신산업<sup>참고2</sup></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중 타 허용용도를 만족하는 업종</li> <li>-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li> <li>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소유자 : 공장주, 사용자 :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 기숙사 50% 이상 이용 가능한 공동취사시설 충족하고 기숙사를 특정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등</li> <li>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거목(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더목(단란주점), 러목(안마시술소) 제외)</li> <li>5)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li> </ul> </li> <li>6)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li> </ol> </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up>참고3</sup></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 이하</li> </ul>
		층수(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 (45m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단, 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 녹화,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li> <li>• 불연재 사용 권장</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li> </ul> </li> </ul>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1-3 (산업시설 용지) ※지식산업센터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의한 입주가능 시설 중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25, C26, C27, C28, C29, C30, C31, C33에 한함)</li>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sup>참고1</sup>, 정보통신산업<sup>참고2</sup></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중 타 허용용도를 만족하는 업종</li> <li>-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식산업센터 연면적의 3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li> <li>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소유자 : 공장주, 사용자 :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 기숙사 50% 이상 이용 가능한 공동취사시설 충족하고 기숙사를 특정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거목(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더목(단란주점), 러목(안마시술소) 제외)</li> <li>5) 「건축법시행령별표」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li> </ul> </li> <li>6)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li> </ul> </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up>참고3</sup></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층수(높이)	• 5층 이하 (45m이하)
		배치	•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단, 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 녹화,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li> <li>• 불연재 사용 권장</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li> </ul>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 2m</li> </ul> </li> </ul>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2-2 산업4-1  (산업시설 용지) ※중소 기업 전용 단지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2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업체</li>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li> <li>-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li> <li>-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제조업)</li> <li>- C28(전기장비 제조업)</li> <li>- C29(기타 기계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li>-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li>-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li>- C33(기타제품 제조업)</li> </ul> </li> </ul> ※ 해당 획지내 2개 이상 업종 복합 가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mall>참고3</small></li> </ul>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300% 이하		
		층 수 (높 이)	• 5층 이하 (45m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넓은 면은 도로와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축 벽면에 요철을 주거나 마감을 다르게 하여 변화감을 형성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단, 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 녹화,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li> <li>• 불연재 사용 권장</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천막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li> </ul>		
		색 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 축 선	-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 ②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지원1 (지원시설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중 기숙사</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파목 (골프연습장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거목 (고시원), 너목(제조업소), 더목(단란주점), 러목(안마시술소) 제외)</li> <li>-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li> <li>-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운동시설(옥외에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옥외 운동장 제외)</li> <li>- 업무시설</li> <li>-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허용도</li>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mall>참고3</small></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높이)	• 6층 이하 (45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면방향</li> <li>-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방향</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3분의 2이상 설치 (단, 평지붕의 경우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 녹화, 단 옥상주차장 설치시 옥상녹화 제외)</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li> <li>•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li> </ul>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li> <li>- 폭 2m</li> </ul>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③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차장 용지)	주1 주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li> <li>• 주차전용건축물 및 다음의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목(골프연습장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거목(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더목(단란주점), 러목(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판매시설 중 상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li> </ul> </li> <li>※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연면적의 30%이내 (단,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연면적의 2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li> <li>• 불허용도에 따른 입주제한 <small>참고3</smal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9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1,50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36m 이하</li> <li>- 전면도로까지의 너비(16m) × (36/도로의폭16m)배 = 36m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건축물 전면개방감 확보 및 정연한 가로별 경관 유도</li> <li>- 폭 2m</li> </ul>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④ 참고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구분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M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M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M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M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M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M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광고물 작성업	M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M7139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J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2 만화 출판업	
	J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J58121 신문 발행업	
	J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M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2 제품 디자인업	
	M73203 시각 디자인업	
	M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M75994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등(세부내용 법률참조)	

구분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지식산업	경영컨설팅업	M71531 경영 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M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M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E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E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M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M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M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N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M71310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M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N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시행령 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경영하는 입주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한정(법률참조)	

⑤ 참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구분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정보통신 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J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11 자료 처리업
		J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J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기통신업	J61210 유선통신업
J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J61291 통신 재판매업		
J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⑥ 참고3. 상기 불허용도 기준에 의거한 입주제한 (변경 : 입주제한 8개 업종 추가)

입주제한	
대기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업체</li> </ul>
악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li> <li>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2조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 100U를 초과하는 배출업체</li> </ul>
수질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li> <li>「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 업체</li> </ul>
폐기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업체</li> </ul>
기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업체</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제조업체</li> <li>「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2항4호에 의한 제한사항임</li> </ul> </li> <li>「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6년 2월 30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아닌 업체(중소기업전용단지에 한함)</li> </ul>

중분류	입주제한 업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업(25922)</li> <li>○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li> </ul>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li> <li>○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li> <li>○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li> <li>○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4)</li> </ul>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무·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li> <li>○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li> </ul>

\* 입주 제한업종 중 입주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주 가능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 업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담 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은 제외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
	산업9 산업10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②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원	지원1	담 장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름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각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 설치

③ 주차장용지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1 주2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각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
		보행자 동선	·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접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친환경 계획	·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을 충족하도록 권장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시설 수의 20%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권장

④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가로 식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종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수종 중 기후를 고려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선정</li> <li>- 가로수 식재시 수고 4m이상, 흉고 직경 6cm이상 또는 근원직경 8cm이상의 교목 식재</li> <li>- 장식화단에는 가로별 계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목 및 초화류 식재</li> </ul> </li> <li>· 가로수 식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6-8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li> </ul> </li> </ul>
가로 포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교차지점에 입지한 오픈스페이스의 포장패턴은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계양산업단지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li> <li>- 일반구간의 경우 주변 지역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단순한 형태의 패턴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조화되어 정연한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함</li> </ul> </li> <li>· 차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유형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li> <li>-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차도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거친 재질의 포장재 및 둔덕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환경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조성</li> <li>- 보행 및 자전거도로, 자동차 교차접속구간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키도록 권장</li> </ul> </li> </ul>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 사용 원칙</li> <li>- 자전거 도로의 포장색채는 보도 및 차도와 다르게 적용하여 이용자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출</li> </ul> </li> <li>· 교차접속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li> <li>- 간선도로의 자전거 횡단구간에는 자전거 형태를 도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와 차도와의 경계부에는 턱이 없는 경계석 설치</li> </ul> </li> </ul>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접속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보도는 휠체어와 보행자약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 턱을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 설치</li> </ul> </li> <li>· 버스정차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li> </ul> </li> </ul>

구 분		계 획 내 용
		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치
건축물의 색채	산업시설용지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자연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세련되며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외벽색은 저채도의 그레이 계열이나 무채색 계열중 중명도 톤을 적용하여 사용</li> <li>건축물의 외벽 혹은 부수적으로 넓은 면적의 보조시설에 사용하는 주요색은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라이트그레이, 웜그레이 계열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강조색의 경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으로 옐로우 계열을 제한적으로 저층부에 사용하여 특색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함</li> </ul>
	지원 및 기타 시설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사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외벽색은 밝은 톤의 중·고명도의 색상을 적용</li> <li>위압감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방감과 함께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상을 배색 적용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지양</li> <li>여러색채를 사용하여 채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용 수를 제한</li> <li>전면공간의 색상은 건축물과 주변 포장재질과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슷한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li> <li>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획</li> </ul>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물 등의 설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상 공업지역 내 총 설치 가능 간판 수는 3개 이하</li> <li>간판 유형과 관계없이 1업소 1간판을 설치하도록 권장.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 추가 설치 가능</li> </ul> </li> <li>광고물 등의 재질 및 색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며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 사용 지양</li> <li>건축마감재 및 주변 환경, 산업단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하고 친환경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li> <li>바탕색에 적색 또는 흑색 사용은 1/2 이내로 적용하고 건축물 입면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도록 권장</li> <li>돌출색 및 원색을 사용을 지양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li> </ul> </li> <li>광고물 등의 문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으나 돌출되거나 인지성이 떨어지는 서체 사용은 지양</li> <li>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함</li> <li>표시내용에는 메뉴·가격·실물사진 등 영업내용 이미지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정보만 표시</li> </ul> </li> </ul>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지정</li> <li>건물명 표시, 지주형 간판, 일체형·돌출형 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 시 광고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원칙</li> </ul> </li> </ul>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계양산업단지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서 참조 : 게재생략

##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양산업단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 일원	243,086	증) 3.4	243,082.6	

##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 (<http://www.eum.c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도서: 『별첨』 (게재생략)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전화: 032-440-467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개발과(전화: 032-450-5643)

## ※ 별첨 (게재 생략)

- ① 위 치 도
- ② 일반산업단지 지정도
- ③ 개발계획 결정도
- ④ 용도지역 결정도
- ⑤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⑥ 유치업종 배치계획 결정도
- ⑦ 기반시설계획 결정도
- ⑧ 용수공급계통 결정도

- ⑨ 주요시설지원 결정도
- ⑩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⑪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⑭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⑮ 지형도면 고시도

붙임.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1	계양구 병방동	219	9	구	1,099.0	1,099.0	국(농림축산식품부)					
2	계양구 병방동	219	17	구	968.0	968.0	국(농림축산식품부)					
3	계양구 병방동	219	21	구	552.0	552.0	국(농림축산식품부)					
4	계양구 병방동	219	22	구	1,019.0	1,019.0	국(농림축산식품부)					
5	계양구 병방동	219	25	구	22.0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6	계양구 병방동	219	26	구	1,399.0	1,399.0	국(농림축산식품부)					
7	계양구 병방동	239	5	답	2,922.0	2,922.0	공(계양구)		100분의 3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0분의 70			
8	계양구 병방동	239	6	답	2,197.0	2,197.0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9	계양구 병방동	239	7	답	2,293.0	2,293.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10	계양구 병방동	240	5	답	3,677.0	3,677.0	이○○	인천광역시 북구 입학동 ****				
11	계양구 병방동	240	6	전	2,792.0	2,792.0	매○○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성명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지상권
12	계양구 병방동	241	2	전	2,083.0	2,083.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13	계양구 병방동	241	7	답	2,376.0	2,376.0	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14	계양구 병방동	242	1	전	3,861.0	3,861.0	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15	계양구 병방동	242	2	전	3,048.0	3,048.0	김○○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16	계양구 병방동	242	11	도	52.0	52.0	국(국토교통부 )						
17	계양구 병방동	243	1	전	2,351.0	2,351.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18	계양구 병방동	243	2	답	1,545.0	1,545.0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3985분의 1992.5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	
							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3985분의 199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19	계양구 병방동	243	3	과	3,459.0	3,459.0	김○○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2분의 1			
							구○○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2분의 1			
20	계양구 병방동	243	4	답	590.0	590.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21	계양구 병방동	244	1	전	2,630.0	2,630.0	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
22	계양구 병방동	244	2	전	2,379.0	2,379.0	박○○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23	계양구 병방동	244	3	전	680.0	680.0	공(계양구)		30분의 9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30분의 21			
24	계양구 병방동	244	7	전	1,208.0	1,208.0	박○○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1208분의 904	○○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근저당권
							장○○	부천시 오정로 ****	1208분의 304	○○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	지상권
25	계양구 병방동	245	3	전	3,260.0	3,260.0	노○○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26	계양구 병방동	245	9	전	3,664.0	3,664.0	박○○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3분의 1			
							박○○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	3분의 1			
							박○○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분의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27	계양구 병방동	245	10	전	3,672.0	3,672.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28	계양구 병방동	246		도	1,003.0	1,003.0	국(농림축산식품부)					
29	계양구 병방동	246	6	도	1,498.0	1,498.0	국(농림축산식품부)					
30	계양구 병방동	247	1	전	2,953.0	2,953.0	노○○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31	계양구 병방동	247	2	답	695.0	695.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32	계양구 병방동	247	5	천	3.0	3.0	국(환경부)					
33	계양구 병방동	247	6	천	17.0	17.0	국(환경부)					
34	계양구 병방동	247	7	도	86.0	86.0	국(국토교통부)					
35	계양구 병방동	248	1	답	1,126.0	1,126.0	조○○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36	계양구 병방동	249	2	전	2,772.0	2,620.9	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계양○○○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근저당권
37	계양구 병방동	249	3	전	3,088.0	3,088.0	노○○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38	계양구 병방동	250	1	도	377.0	377.0	국(농림축산식품부)					
39	계양구 병방동	250	2	전	1,114.0	1,114.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40	계양구 병방동	250	3	전	2,393.0	2,393.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41	계양구 병방동	251	1	전	3,974.0	3,974.0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신용협동조합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	근저당권
										○○○신용협동조합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	지상권
42	계양구 병방동	251	2	전	5,074.0	5,074.0	윤○○	부천시 원종로 ****	9분의 3			
							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	9분의 2			
							권○○	부천시 원종로 ****	9분의 2			
							권○○	부천시 조마루로 ****	9분의 2			
43	계양구 병방동	252	1	과	2,972.0	2,972.0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				
44	계양구 병방동	252	2	과	2,069.0	2,069.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45	계양구 병방동	252	3	과	1,954.0	1,954.0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46	계양구 병방동	253		전	3,279.0	3,279.0	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47	계양구 병방동	254	1	전	1,462.0	1,462.0	공(계양구)		30분의 9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30분의 2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48	계양구 병방동	254	2	전	639.0	639.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별로 ****		황○○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 ****	근저당권
										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남길 ****	
49	계양구 병방동	254	3	전	1,788.0	1,788.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50	계양구 병방동	255	1	전	1,021.0	1,021.0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				
51	계양구 병방동	255	2	전	3,035.0	3,035.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3035분의 120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607분의 367			
52	계양구 병방동	256	1	전	3,392.0	3,392.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53	계양구 병방동	256	2	전	3,382.0	3,382.0	김○○	부천시 원미구 상동 ****				
54	계양구 병방동	257	1	전	5,326.0	5,326.0	김○○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55	계양구 병방동	257	2	전	2,220.0	2,220.0	송○○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56	계양구 병방동	257	3	전	2,216.0	2,216.0	박○○	부천시 산업로 ****	2분의 1			
							고○○	부천시 여월로 ****	2분의 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57	계양구 병방동	258	1	전	3,650.0	3,650.0	신○○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	6분의1	○○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김○○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	6분의1			
							공(계양구)		30분의6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30분의14			
58	계양구 병방동	258	2	전	2,221.0	2,221.0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59	계양구 병방동	258	3	전	1,947.0	1,947.0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길 ****				
60	계양구 병방동	259		구	1,464.0	1,464.0	국(농림축산식품부)					
61	계양구 병방동	259	5	구	1,594.0	1,594.0	국(농림축산식품부)					
62	계양구 병방동	260	1	답	4,192.0	4,192.0	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지상권
63	계양구 병방동	260	2	답	2,020.0	2,020.0	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64	계양구 병방동	260	3	답	2,020.0	2,020.0	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길 ****		○○○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	근저당권
65	계양구 병방동	261	1	답	3,395.0	3,395.0	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66	계양구 병방동	261	2	답	4,579.0	4,579.0	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10분의 6			
							박○○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10분의 4			
67	계양구 병방동	262	1	답	3,217.0	3,217.0	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근저당권
										○○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지상권
68	계양구 병방동	262	2	답	4,777.0	4,777.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69	계양구 병방동	263	1	전	2,727.0	2,727.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70	계양구 병방동	263	2	전	2,701.0	2,701.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71	계양구 병방동	264	1	전	443.0	443.0	공(계양구)		24960분 의 74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24960분의 17472			
72	계양구 병방동	265	1	전	3,391.0	3,391.0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73	계양구 병방동	265	2	전	2,595.0	2,595.0	공(계양구)		20분의 6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20분의 14			
74	계양구 병방동	265	3	답	4,010.0	4,010.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75	계양구 병방동	265	5	전	2,001.0	2,001.0	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2분의1			
							백○○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2분의1			
76	계양구 병방동	266	1	답	3,955.0	3,955.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77	계양구 병방동	266	2	전	2,846.0	2,846.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78	계양구 병방동	266	3	전	3,625.0	3,625.0	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목○○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백○○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최○○	부천시 원미구 상동 ****	
79	계양구 병방동	267	1	도	216.0	216.0	국(농림축산식품부)					
80	계양구 병방동	267	2	전	2,711.0	2,711.0	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81	계양구 병방동	267	13	전	1,168.0	1,168.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82	계양구 병방동	268		도	1,083.0	1,083.0	국(농림축산식품부)					
83	계양구 병방동	268	5	도	453.0	453.0	국(농림축산식품부)					
84	계양구 병방동	269	2	답	93.0	93.0	공(인천광역시)					
85	계양구 병방동	269	3	답	322.0	322.0	김○○	부천시 삼각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86	계양구 병방동	270	1	전	1,460.0	1,460.0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87	계양구 병방동	270	2	답	1,518.0	1,518.0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88	계양구 병방동	270	3	전	274.0	274.0	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89	계양구 병방동	271		전	521.0	521.0	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90	계양구 병방동	272		전	3,241.0	3,241.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91	계양구 병방동	273		전	4,098.0	4,098.0	공(계양구)		30분의 9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30분의 21			
92	계양구 병방동	274		전	4,219.0	4,219.0	공(계양구)		20분의 6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20분의 14			
93	계양구 병방동	275		답	4,200.0	4,200.0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갈로 ****				
94	계양구 병방동	275	1	답	2,018.0	2,018.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95	계양구 병방동	276		전	1,286.0	1,286.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96	계양구 병방동	277		전	6,003.0	6,003.0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243,233.7	243,082.6	성명	주소	지분	
97	계양구 병방동	278		전	4,162.0	4,162.0	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98	계양구 병방동	279		전	2,308.0	2,308.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99	계양구 병방동	280		전	2,811.0	2,811.0	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100	계양구 병방동	281	1	전	715.0	715.0	공(계양구)		10분의 3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39(신서동)	10분의 7			
101	계양구 병방동	441	4	도	9,089.8	9,089.8	공(인천광역시 )					
102	계양구 병방동	441	5	도	4,619.7	4,619.7	공(계양구)					
103	계양구 병방동	441	6	도	4,548.2	4,548.2	공(계양구)					

## □건축물 및 지장물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7	전력주		동양지2A1L16R1		1			한국전력공사
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7	전력주		동양지2A1L16R2		1			한국전력공사
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7	전력주		동양지76R1HL16R3		1			한국전력공사
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7	전력주		동양지2A1L16R4		1			한국전력공사
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7	전력주		동양지2A1L16R5		1			한국전력공사
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9-8	전력주		동양지2A5L1		1			한국전력공사
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9-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49.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이○○
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9-2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1.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이○○
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9-2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이○○
1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0.3			김포시 감정동 ****	홍○○
1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9-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53.3			김포시 감정동 ****	홍○○
1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68.8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61.5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89.8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81.1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91.9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501.8			인천광역시 북구 임학동 ****	이○○
1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0-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매○○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1-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82.8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김○○
2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3.4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김○○
2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김○○
2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18.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서○○
2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1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서○○
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67.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김○○
2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2	울타리	그물망	214.4x1.0		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김○○
2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2	관정				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김○○
2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5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92.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서○○
2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5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서○○
2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2-5	관정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	서○○
3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1.5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임○○
3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1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23.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임○○
3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임○○
3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1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6.3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임○○
3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1	관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임○○
3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나○○
3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2	울타리	그물망	173.0x1.0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나○○
3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10.3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3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848.8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김○○
3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3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3.2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김○○
4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3	울타리	그물망	69.6x1.0		1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김○○
4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3-3	관정				1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	김○○
4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9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조○○
4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조○○
4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1	울타리	웬스	226.3x2.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조○○
4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1	관정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조○○
4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5.5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4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2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2.9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4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04.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4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3.6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5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2	울타리	웬스	93.0x2.0		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5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96.6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4-7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1.8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박○○
5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8.9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78.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3.4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5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00.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85.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83.8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5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0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6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94.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6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9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6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8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박○○
6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99.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5.7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4.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09.2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13.9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14.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6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08.3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7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1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7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1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7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7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울타리	웬스	7.5x2.0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7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2	통신주		철주 H7		1			㈜○○ 계양지점
7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33.5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노○○
7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93.2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노○○
7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11.9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노○○
7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3	울타리	웬스	119.1x1.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	노○○
7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5-3	통신주		철주 H7		1			㈜○○ 계양지점
8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6-4	전력주		동양지2A1L15		1			한국전력공사
8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6-4	전력주		-		1			한국전력공사
8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6-4	통신주		철주 H7		1			㈜○○ 계양지점
8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6-4	통신주		보조철주 H7		1			㈜○○ 계양지점
8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7-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202.3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8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7-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5.9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8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7-1	울타리	웬스	96.0x1.5		1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8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76.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8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77.4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8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73.8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9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9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49.2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9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3.6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9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34.3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9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9.3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	서○○
9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2	전력주		동양지2A1L18L1H1L1		1			한국전력공사
9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0.9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9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0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9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4.8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9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1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10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6.3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10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6.2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10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384.3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10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울타리	웬스	214x2.0		1		인천광역시 북구 산곡동 ****	노○○
10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전력주		동양지2A1L16		1			한국전력공사
10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49-3	전력주		동양지2A1L17		1			한국전력공사
10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1	전력주		동양지2A1L18		1			한국전력공사
10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3.6			김포군 계양면 박촌리 ****	노○○
10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8			김포군 계양면 박촌리 ****	노○○
10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667.3			김포군 계양면 박촌리 ****	노○○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1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2	울타리	웬스	169.9x1.5		1		김포군 계양면 박촌리 ****	노○○
11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5.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9.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6.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30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59.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69.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1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0-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8.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김○○
12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48.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3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	유○○
12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2.7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2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4.2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94.9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6.9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0.8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980.8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1.7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3.4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1.1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6.6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8.4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3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1-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5.4			부천시 오정구 작동 ****	권○
14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1	건물	창고	비닐하우스	137.4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5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1	건물	저온창고	조립식판넬	37.3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2.8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1	울타리	웬스	147.7x2.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2	건물	정자	목조기와	2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2	연못		19.5x0.8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14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3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4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3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3.4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장○○
14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2-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8.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장○○
15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3	전력주		동양지2A1L16R6		1			한국전력공사
15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6.0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	이○○
15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0.5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	이○○
15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4.6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	이○○
15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	이○○
15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43.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김○○
15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2.6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김○○
15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459.5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김○○
15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3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김○○
15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4-3	전력주		동양지2A5L8		1			한국전력공사
16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7.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김○○
16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38.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김○○
16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95.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김○○
16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관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김○○
16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	전력주		동양지2A5L7		1			한국전력공사
16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47.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6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2.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6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6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저온창고	조립식판넬	13.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6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05.6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7.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3.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4.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강○○
17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1	전력주		동양지2A5L6		1			한국전력공사
17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7.1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7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4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7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7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9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8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90.2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8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83.3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8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4.5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18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6-2	울타리	웬스	7.6x1.5		1		부천시 원미구 상동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18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8.7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8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8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1.9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8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6.4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8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4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8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3.7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9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40.6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9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관정				1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9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관정				1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19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전력주		동양지2A5L4		1			한국전력공사
19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1	전력주		동양지2A5L5		1			한국전력공사
19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2.8			인천광역시 부평구길주남로 ****	송○○
19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2	전력주		동양지2A5L3		1			한국전력공사
19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3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9.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전○○
19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7-3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전○○
19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1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3.5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	김○○
20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1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3.6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	김○○
20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5.0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0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9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	김○○
20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1	전력주		동양지2A5L2		1			한국전력공사
20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86.6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0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6.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0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3.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0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0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2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0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2	울타리	웬스	244.9x2.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마루길 ****	최○○
21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3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이○○
21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8-3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4.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이○○
21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0-2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2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박○○
21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0-2	전력주		동양지2A10L2		1			한국전력공사
21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0-3	전력주		동양지2A10L1		1			한국전력공사
21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1-2	전력주		동양지2A10L3		1			한국전력공사
21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1	전력주		동양지2A10L4		1			한국전력공사
21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2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1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48.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1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4.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2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99.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3.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61.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54.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3.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울타리	웬스	28.1x1.5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김○○
22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2-2	전력주		동양지2A10L5		1			한국전력공사
22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3-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9.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조○○
22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3-1	전력주		동양지2A10L6		1			한국전력공사
22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3-2	전력주		동양지2A10L7		1			한국전력공사
23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6.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이○○
23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08.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이○○
23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4.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이○○
23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1	울타리	그물망	127.5x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	이○○
23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1	전력주		동양지2A1L20R1R5		1			한국전력공사
23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0.0			부천시 양지로 ****	최○○
23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9.5			부천시 양지로 ****	최○○
23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4.1			부천시 양지로 ****	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3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567.9			부천시 양지로 ****	최○○
23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575.7			부천시 양지로 ****	최○○
24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571.0			부천시 양지로 ****	최○○
24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2	울타리	그물망	117.1x1.0		1		부천시 양지로 ****	최○○
24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3	전력주		동양지2A1L20R1R3		1			한국전력공사
24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3	전력주		동양지2A1L20R1R2		1			한국전력공사
24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5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3.7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정○○
24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5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8.7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정○○
24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5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정○○
24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5	울타리	그물망	11.1x1.0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로 ****	정○○
24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5-5	전력주		동양지2A1L20R1R4		1			한국전력공사
24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6-1	전력주		동양지2A1L20R1B1		1			한국전력공사
25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6-2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5.5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김○○
25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6-2	전력주		동양지2A1L20R2		1			한국전력공사
25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6-3	건물	창고	파이프천막	1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김○○
25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6-3	전력주		동양지2A1L20R1		1			한국전력공사
25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1.8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전○○
25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건물	건사	파이프비닐	30.8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5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7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전○○
25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84.2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전○○
25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울타리	그물망	67.4x1.0		1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전○○
25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전력주		동양지2A1L20		1			한국전력공사
26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전력주		동양지2A1L19		1			한국전력공사
26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2	전력주		동양지2A1L18L1H1		1			한국전력공사
26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9.7			부천시 중동 ****	고○○
26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49.1			부천시 중동 ****	고○○
26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73.7			부천시 중동 ****	고○○
26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7-3	전력주		동양지76R1HL18H1L1		1			한국전력공사
26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9-1	전력주		동양지2A1L20R5		1			한국전력공사
26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9-1	전력주		동양지2A1L20R4		1			한국전력공사
26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9-1	전력주		동양지2A1L20R3		1			한국전력공사
26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69-4	전력주		동양지2A14L6		1			한국전력공사
27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11.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3.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2.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7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창고	파이프함석	9.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1	관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이○○
27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2.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최○○
27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2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48.8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최○○
27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2	울타리	웬스	132.3x1.2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최○○
28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1.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진○○
28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진○○
28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0-3	울타리	그물망	132.5x1.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진○○
28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1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진○○
28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1	관정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진○○
28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2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22.8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28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2	건물	창고	파이프함석	12.6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28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2	건물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인천광역시 북구 작전동 ****	김○○
28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2	전력주		동양지2A10L9		1			한국전력공사
28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2	전력주		동양지2A10L8		1			한국전력공사
29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63.0			부천시 평천로 ****	임○○
29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44.2			부천시 평천로 ****	임○○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29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3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34.3			부천시 평천로 ****	임○○
29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3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4.2			부천시 평천로 ****	임○○
29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4	전력주		동양지2A10L5R1		1			한국전력공사
29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5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2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갈로 ****	김○○
29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5	관정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갈로 ****	김○○
29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5-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김○○
29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6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20.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29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6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0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5.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66.8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9.8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9.7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건물	계사	조립식판넬	1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울타리	그물망	39.3x1.0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관정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최○○
30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7	전력주		동양지2A10L1		1			한국전력공사
30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8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8.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윤○○
30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8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5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윤○○
31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66.9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31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97.3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174.7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71.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21.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3.6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5.4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	관정				1		인천광역시 북구 부평동 ****	최○○
31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1	전력주		동양지2A14L1		1			한국전력공사
31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1	전력주		동양지2A14L2		1			한국전력공사
32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1	전력주		동양지2A14L3		1			한국전력공사
32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1	전력주		동양지2A14L4		1			한국전력공사
322	인천	계양구	병방동	279-1	전력주		동양지2A14L5		1			한국전력공사
323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8.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25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5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26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3.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27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건사	파이프비닐	3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328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0	건물	창고	조립식판넬	1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양○○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329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1-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84.3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이○○
330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1-1	건물	창고	파이프비닐	17.8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이○○
331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1-1	건물	창고	파이프합석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이○○
332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전력주		동양지2A1L7		1			한국전력공사
333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전력주		동양지2A1L8		1			한국전력공사
334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맨홀		KT		10			○○계양지사
335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맨홀		LGU+		4			LGU+
336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가로등				26			계양구
337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표지판				16			계양구
338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맨홀		한전		7			한국전력공사
339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가로등점멸기				2			계양구
340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	변압기				2			한국전력공사
341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1	맨홀		콘크리트		3			계양구
342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2	맨홀		그레이팅		5			계양구
343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2	맨홀		우수		3			계양구
344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2	맨홀		콘크리트		2			계양구
345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2	가로등점멸기				1			계양구
346	인천	계양구	병방동	441-2	우수펌프시설				1			계양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수령 (년)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90호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막역)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인천1호선 동막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 4. 8.

### 인천광역시장

####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80(동춘동)  
(인천1호선 동막역)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명칭: 인천1호선 동막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 3. 사업시행 규모

- 동막역 3번 출입구 및 내부계단 설치 (사업면적: 185.16㎡)
  - 3번 출입구: 폭 5.0m, 연장 30.264m, 높이 10.317m (E/S 2대(상·하행))
  - 내부 계단: 폭 4.1m, 연장 8.253m, 높이 3.725m (W/L 수직형 1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교통공사 대표 김성완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5.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주 소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연수구 동춘동	958	도로	79309.4	185.16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장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동막역 3번 출입구 및 내부계단 설치 (사업면적: 185.16㎡)
  - 3번 출입구: 폭 5.0m, 연장 30.264m, 높이 10.317m (E/S 2대(상·하행))
  - 내부 계단: 폭 4.1m, 연장 8.253m, 높이 3.725m (W/L 수직형 1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71호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1단계)]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북산역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4. 4.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8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중 역사공원)
- 명 칭: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 면 적: 9,690㎡

※ 실시계획인가 면적(10,090㎡)에서 감400㎡[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반영(강고 제2023-47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기간

- 2020. 6. 15.(최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8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사베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61호)	이창주	2005.2.25.	기술 인력 변경	이창주 (대기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좌동
				박혜영 (대기환경기사)	박용희 (대기환경기사)
				이하정 (산업위생관리기사)	위성준 (전기기사)
				박찬훈 (화공기사)	좌동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0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소재지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퓨리엔텍(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45호)	원영학	2018. 9. 5.	소재지 변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디동 611호 (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디동 607호 (계산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03호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4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 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4월 8일

### 인천광역시장

#### 1. 개최목적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4. 23.(화) 15:00~16:00
- 장 소: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동구 화수안로 42번길(화수동)]

#### 3. 사업 개요

- 사업명: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위 치: 인천 동구 화수동 7-116번지 일원
- 면 적: 18,375.3㎡

- 기 간: 2025년 ~ 2029년(5년)
- 목 적: 화수부두 일원의 산업·문화·상업·주거·행정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 조성

#### 4. 의견 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2024. 4. 23.(화) 18:00 접수분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민원동 3층 도시균형정책과, 팩스(☎032-440-8667) / 전자우편(kim266@korea.kr)
  - 의견서 서식: 공청회 장소 비치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44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16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320504	주식회사 에스엘케이솔루션 대표 이정훈, 박창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32, 주식회사 에스엘케이솔루션 (원창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2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1) 업 체 명 : (주)가온이앤이
- 2) 대 표 자 : 이태호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A동 317호(고잔동)
-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관리대행기관
- 5) 지 정 번 호 : 유독물 제64호
- 6) 지 정 일 자 : 2024. 4.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3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2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열람합니다.

2024. 4. 8.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2호선)사업
- 명칭: 주안동 154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대로1-12호선) 보·차도 개선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A=2,623㎡
- 규모: L=257.3m, B=10.2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48, 3층(주안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주안동	1541	도	23,123.9	2,623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4, 남동구 정각로 29)
-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9.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35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 인천광역시장

### 등록(변경)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변경사항			등록연월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00-0- 인천광역시-103호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2층 (동춘동)	대표자	구 광 회	이 평 우	2024.4.5. 변경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 - 939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 인천광역시장

###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320467	주식회사 비엔솔루션 (권종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부평제이타워3차지식산 업센터 820~822호 (청천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영업정지 15일 (‘24.4.6.~’24.4.20.) [2024.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41호

##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과 도시 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 중구 건축과(760-7484)
3. 열람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 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구 북성동, 향동, 중앙동, 관동, 송학동 일원	-	증)470,878	470,878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함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안):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향동 6가 1 일원	470,878	-	470,878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 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 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건축과(☎44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942호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320462	거산이앤지 (서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3, 302호	2024.4.4.	자진 폐업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5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마련 등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관사의 사용대상 명확화 (안 제34조제1항)
- 나. 사용허가 절차 규정 (안 제34조제2항 등)
- 나. 사용허가 신청서 등 서식 규정 (안 별표 제26호서식 등)

## 3. 자치법규안: 별첨

##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참조: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440-2606, 팩스: 440-8709, 전자메일: pluto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산관리관은 신청을 한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례 제5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례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사를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퇴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 □ 신청사유

구 분	증빙서류
무 주 택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출·퇴근 곤란	주민등록등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신청사유 증빙서류

\_\_\_\_년 \_\_월 \_\_일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어긋나지 않음을 서약하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관사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퇴거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때에는 시설물을 반납하고 지체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서약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 관사 사용허가서

##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허가대상

- 소 재 지:
- 명 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소속기관장)

[별지 제28호서식]

## 관사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관사주소			
취소사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소속기관장)

[별지 제29호서식]

## 관사퇴거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관사주소			
퇴거사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신 청 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 관사 관리대장

## 1. 관사 현황

관사명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___m <sup>2</sup> (전용 ___m <sup>2</sup> )
건축일자		건물구조	___층 / ___실
참고사항			

## 2. 입주자 현황

사 용 자				사용개시 연 월 일	사용종료 연 월 일	퇴거사유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 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p> <p>② 조례 제52조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재산관리관은 신청을 한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례 제5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p>

현행	개정안
	<p><u>라 퇴거를 명령하여야 한다.</u></p> <p>⑤ <u>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사를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퇴거를 신청하여야 한다.</u></p> <p>⑥ <u>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u></p>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7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요금 조정, 감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정비함.

- 누수 발생시 요금조정을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6항,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 수도전 폐전신청서, 중수도·빗물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

면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제8호의4서식 및 제8호의5 서식 신설, 제32조의3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3호서식)

다. 이의신청에 관한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함.(안 제35조의5 및 별지 제44호서식 신설)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층 경영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영미(전화번호 032-720-2042,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choiym070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을 “급수중지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로 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받고자 할 때에는”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를 “붙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 요금 감면신청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신청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고,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이의신청)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종합민원신청서

신청구분  명의변경  급수중지  업종변경  가구분할  계량기시험  개 전  전자고지

접수번호 \_\_\_\_\_ 접수일자 \_\_\_\_\_ 접수자 \_\_\_\_\_ 신청방법 \_\_\_\_\_

#### 수용가정보

\*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도전내역 고객번호 \_\_\_\_\_ 업종 \_\_\_\_\_ 가구수 \_\_\_\_\_

주소 \_\_\_\_\_

기존사용자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토지및건물소유자 성명 \_\_\_\_\_

#### 민원신청사항

\*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종류	신청내용			*첨부서류	관련규칙
명의변경	신사용자(소유자)		사유	가, 나	제18조
급수중지	급수중지기간	년 월 일 일부터 일까지	사유	가	제19조
업종변경	신업종		사유	-	제20조
가구분할조정	신청전가구수		신가구수	다	제23조
계량기시험	시험희망일자	년 월 일	사유	-	제24조
개 전	개전희망일자	년 월 일	사유	라	제31조 (규정제9조)
전자고지 (200원 감면)	생년월일 (비밀번호)	년 월 일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	-	제36조

**\*첨부서류**

- 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권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 상수도 민원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기 상수도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	상수도 민원처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수도 민원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문자서비스(민원 처리 결과, 단수 정보, 수질 정보 등) 수신 :  동의,  미동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명(생년월일)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 ( ) (HP)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 ( ) (HP)

신청인과 사용자와의 관계 : \_\_\_\_\_ (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_\_\_\_\_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8호의3서식]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전 폐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급수전소재지				
고객번호			수용가명	
계량기위치			최종지침	m <sup>3</sup>
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			전화번호	
폐전희망일자		년 월 일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 [수도전 폐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전 폐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수도전 폐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전 폐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lt; 폐전시 주의사항 &gt;

-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도물을 재사용 할 수 없으며 폐전 된 수도전을 재사용코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14조]
-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도물을 공급 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_\_\_\_\_ 수도사업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의4서식]

##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와외 관 계	
고객번호			수용가명	
급수전 주소				
업종			구경	mm
건축물의주용도			건축연면적	m <sup>2</sup>
시설(처리)용량		(m <sup>3</sup> /일)	사용수량	(m <sup>3</sup> /일)
중수도처리방법			사용용도	
설치완료일자			가동일자	
신청방법			적용일자	
결과회신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_\_\_\_\_ 수도사업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중수도설치통보서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 수질검사결과통보서
- 중수도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8호의5서식]

(앞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세주소)		전화번호	
			수용가와의 관계	
고객번호			수용가명	
급수전 주소				
업종 (가구수)		용(가정용 가구)	신청방법	
감면대상자	신청구분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원	동 · 호수	-

※ 첨부서류

- 수급자증명서 1통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_\_\_\_\_ 수도사업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8호의5서식]  
(뒷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 민감정보 처리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준영구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요금 감면대상 자격 및 변동 확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	요금감면 종료시 까지
인천광역시 및 군·구 하수도 업무 담당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다가구 주택 관리자	요금 감면대상 자격 여부 확인 및 변동사항 안내	감면대상자의 성명, 주소, 고객센터, 자 격정보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1호서식]

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제34조제2항 관련)

권리자	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과오납액	납기		과목	정당납부액	가납부액	과오납액	환부이자	
	년	월					일수	금액
①과오납합계액			원		①-②충당후잔액(환부액)			원
충당내역	납기		사용요금	정액요금	기타	연체금	계	과오납된사유
	년	월						
②충당금액			원		충당후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_____ 사업소장(인)								

※ 공지사항

- 환부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과오납금환부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

사업소장 귀하

권리자	고객번호				수전번호			
	주소				업종			
	청구자				수용가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환부방법	계좌송금		계좌송금		(은행)(번호)			
	과목	납기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과오납년월일		
청구사유								
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과오납금 환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b>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환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과오납금 환부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환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내용확인		년 월 일						
(인)		청구자			(서명 또는 인)			
<b>과오납금환부영수증</b>								
과목	납기	과오납금	환부이자	영수금액	성명(생년월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3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제34조제4항 관련)

양도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양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과목	납기	과오납금액	과오납연월일	양도하고자하는금액	비고

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_\_\_\_\_ 수도사업소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과오납금 양도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양도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44호서식]

접수일자		<b>이 의 신 청 서</b>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수용가와 의계	
급수전 주소			
수용가명 (상호명)		고객번호	
고지연월		신청방법	
결과회신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공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의신청 사유			

## [ 이의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수도요금 등 고지사항에 대해 이의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_\_\_\_\_ 사업소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급수중지의 및 폐전)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조례 제26조제1항의 <u>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u></p>	<p>제19조(급수중지의 및 폐전) ① -- ----- --<u>급수중지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u>----.</p>
<p>제2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p> <p>⑥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u>받고자 할 때에는</u>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u>첨부하여</u>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입원 또는 빈집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1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받으려는 자는</u>----- ----- ----- <u>붙여</u> <u>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u>----. ----- ----- ----- ----- -----.</p>
<p>⑦ (생략)</p> <p>제32조의3(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고자</u></p>	<p>⑦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3(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u></p>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고,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하는 자가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신청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신청서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고,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의5(이의신청)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8호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센터 기능 수행 관련 행정기관 등 협조 요청(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경제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상영(전화번호 032-440-3264, 팩스번호 032-440-8618, 전자메일 lubi40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1부.
-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 발생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경제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
2. 지역 경제지표 개발 및 관리
3. 주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4. 경제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 개발
5. 지역경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다.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출자·출연의 절차 등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경제동향분석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제4조, 제5조)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제동향분석센터 인건·사업비 등 물가상승률 반영

나. 추계 결과 : 1,692,563천원(5개년 총 금액)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100%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	-	-	-	-	-
세출	소계	250,000	350,000	357,000	364,140	371,423	1,692,563
	경제동향 분석센터 설치·운영	250,000	350,000	357,000	364,140	371,423	1,692,563
재원 조달							
시비	소 계	250,000	350,000	357,000	364,140	371,423	1,692,563
	일반회계	250,000	350,000	357,000	364,140	371,423	1,692,563

## 4. 작성자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4-39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에 맞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현 근무 상황에 따른 상황실장 용어 정의(안 제2조제7항 신설)

나.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안전상황실(장)과 「재난안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 된 재난안전상황실(장)를 구분하고, 현 근무 상황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삭제)

- 재난상황과 →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상황과장 →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장

다. 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형태 반영(안 제7조제2항)

- 24시간씩 3교대 → 4팀 2교대

라. 재난안전상황실 현 근무 시간 반영(안 제8조제1항)

- 매일 오전 09: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 →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

마. 재난상황 보고 방법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추가(안 제11조제5항)

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명시된 안전상황실장의 사무와 재난안전상황실장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안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 상황실장 → 소관부서장

사. 본문 내용 변경에 따른 별표 및 서식 변경

(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3. 개정규정안: 별첨

###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안전상황실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2층 안전상황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상준(전화번호 032-440-5742, 팩스번호 032-440-8845, 전자메일 tojinwo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u>상황실에서</u>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u>수행하</u>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 <u>재난안전상황실에서</u> 각종 재난 ----- ----- ----- ----- <u>수행하</u> 기 ----- -----.
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재난정보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3.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응지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u>협 조·지원</u> 등 필요한 제반활동의	다. ----- ----- ----- ----- <u>협조·지원</u> ----- -----

지시를 말한다.

4. “재난·안전관련 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에 관한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5.·6. (생략)

<신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파악,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본부 재난상황과에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상황실의 운영을 위하여 재난상황과에 재난상황1팀, 재난

-----.

4. -----  
-----  
-----  
----- 재난-----  
-----  
----- 말한다.

5.·6. (현행과 같음)

7. “상황실장”이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최고 상급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난안전상황실-----  
-----  
-----  
--.

제4조(설치) ① -----  
-----  
-----  
-- 내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이 상

상황2팀 및 재난상황3팀을 구성한다.

③ 각 재난상황팀장은 상황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6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재난 상황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과장은 상황실의 운영실무에 관하여 시민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상황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생략)

② 각 재난상황팀은 24시간씩 3교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팀별 인원은 과장이 과 정원 및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과장은 상황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대 횟수 및 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과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제6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소관 부서장-----  
-----.

② 소관부서장-----  
-----  
-----  
-----.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황근무자는 4팀 2교-----  
-----  
----- 소관부서장이 소관부서-----  
-----.

--- 소관부서장-----  
-----  
-----.

③ 소관부서장-----  
-----  
-----  
-----.

- 1. ~ 3. (생략)
-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실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09: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로 한다.

② 당일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전에 출근하여 전일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업무 등 주요사항은 기록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과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 또는 행사지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사전보고 후 재난상황과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경우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  
-----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  
-----

② 상황실 -----  
----- 출근하여 -----  
-----  
-----  
-----

③ 소관부서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  
-----  
-----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  
-----  
-----

1.·2. (생략)

3. 그 밖에 대규모 재난발생이 예측될 경우 등 실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 직원에게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전파) ① 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상황발생 보고 및 전파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 및 본부장 등에게 재난상황 보고를 하고, 수습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에 그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시 관련부서에 전파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 전파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구에 대응 지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

1.·2. (현행과 같음)

3. -----  
----- 상황실장-----  
-----

② 소관부서장-----  
-----  
-----  
-----

③ 소관부서장-----  
----- 소관부서 직원-----  
-----.

제10조(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 ----- 별표 2  
의 재난안전 상황보고 -----  
----- 본부장  
및 소관부서장-----  
-----  
-----.

② 소관부서장-----  
-----  
-----  
-----.

③ -----  
-----

S)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전  
화통신문이나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상황보고)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 : 매일 1회 작성하  
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2. 수시보고 : 재난의 중요성, 시  
급성 등에 따라 긴급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보고(별  
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보고  
의 보고서에는 재난상황을 기재  
하고, 작성서식 및 내용은 과장  
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  
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군·구  
근무자 확인 및 각종 상황보고  
의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  
템(NDMS)을 활용하되, 필요한

필요한

제11조(재난상황보고) ① -----  
-----  
-----  
-----.

- 1. 정기보고: -----  
-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 2. 수시보고: -----  
-----  
- 필요-----  
-----

② -----  
-----  
----- 소관부  
서장-----.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황실장-----  
-----  
-----.

⑤ -----  
-----  
-----  
-----



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 카드 및 관련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점검) ① 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7조(보안관리) ①·② (생략)

③ 과장은 상황 근무요원에 대

-----.

제14조(장비관리) 소관부서장---

-----  
-----  
-----  
-----.

제15조(장비점검) ① 소관부서장-

-----  
-----  
-----  
-----  
-----.

② 소관부서장-----

-----  
-----  
-----.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

-----  
----- 상황실장-----  
-----  
-----.

제17조(보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관부서장-----

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상황실 출입제한)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환경 조성) ① 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  
-----.

제20조(교육·훈련) 상황실장-----  
-----.

제21조(근무환경 조성) ① 소관부서장-----  
-----  
-----.

② 소관부서장-----  
-----  
-----.

[별표 1] (현행)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 (제8조제4항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각종 재난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지휘계통과 과장 및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2. 실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재난수습부서에 전파한다.
3. 후임근무자는 교대시간 30분전까지 출근, 합동 근무하여야 한다.
4.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재난상황 및 모든 운영장비의 가동 상태에 대한 인계·인수를 정확히 한다.
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관제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가동, 운영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8. 상황실 근무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출입 허용 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별표 1] (개정안)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 (제8조제4항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각종 재난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지휘계통과 소관부서장 및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2.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재난수습 부서에 전파한다.
3.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교대시간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전임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업무를 인계·인수 후 근무한다.
4.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재난상황 및 모든 운영장비의 가동 상태에 대한 인계·인수를 정확히 한다.
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관제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가동, 운영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8. 상황실 근무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출입 허용 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별표 2] (현행)

##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전파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 □ 자연재난

구 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 고
태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하천범람,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 피해발생</li> </ul>	예비 특보
홍수/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호우 주의보
강풍/풍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해일/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지역별 별도 지정) 이상이 예상될 때.</li> <li>◦ 기타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ul>	
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교통두절, 노후건축물 붕괴 등 위험상황 발생</li> </ul>	대설 주의보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청 통보 규모 4.0 이상의 모든 지진</li> <li>◦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li> </ul>	규모 4.0이상
황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황사 경보
폭 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최고기온이 35<math>^{\circ}\text{C}</math>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폭염 경보
한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5<math>^{\circ}\text{C}</math> 이상 하강하여 3<math>^{\circ}\text{C}</math>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math>^{\circ}\text{C}</math>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li> <li>◦ 아침 최저기온이 -15<math>^{\circ}\text{C}</math> 이하로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li> <li>◦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li> </ul>	한파 경보

## □ 사회재난

구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고
산불	◦ 「산림보호법」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산림보호법 (제36조)
화재/붕괴/ 폭발	◦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감염병	◦ 제1군감염병(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설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4군감염병(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5호)
가축 전염병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문화재	◦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수질오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사고	수도법(제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도선	◦ 5t 이상의 유선 및 도선이 전도 또는 좌초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유선 및 도선사 업법(제29조제1항)
인명사고	◦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사망	
화학사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싱크홀	◦ 폭 1.0m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항공기 사고	◦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가스 유출	◦ 다량의 가스 유출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고	
기 타	◦ 단일 사고 사망 3명 이상(화재 및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별표 2] (개정안)

##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전파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 □ 자연재난

구 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 고
태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하천범람,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 피해발생</li> </ul>	예비 특보
홍수/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호우 주의보
강풍/풍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해일/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지역별 별도 지정) 이상이 예상될 때.</li> <li>◦ 기타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ul>	
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교통두절, 노후건축물 붕괴 등 위험상황 발생</li> </ul>	대설 주의보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청 통보 규모 4.0 이상의 모든 지진</li> <li>◦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li> </ul>	규모 4.0이상
황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황사 경보
폭 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최고기온이 35<math>^{\circ}\text{C}</math>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폭염 경보
한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5<math>^{\circ}\text{C}</math> 이상 하강하여 3<math>^{\circ}\text{C}</math>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math>^{\circ}\text{C}</math>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li> <li>◦ 아침 최저기온이 -15<math>^{\circ}\text{C}</math> 이하로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li> <li>◦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li> </ul>	한파 경보

## □ 사회재난

구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고
산불	◦ 「산림보호법」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산림보호법(제36조)
화재/붕괴/ 폭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 기반에서 발생한 사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1호)
가축 전염병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발견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발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문화재	◦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수질오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사고	수도법(제7조) 물환경보전법(제16조)
유·도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인명사고	◦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사망	
화학사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싱크홀	◦ 폭 1.0m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항공기 사고	◦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가스 유출	◦ 다량의 가스 유출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고	
기 타	◦ 단일 사고 사망 3명 이상(화재 및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별지 제1호서식] (현행)



# 일일 재난안전 상황보고

재난안전상황실  
440-1880~9

- 2019년 00월 00일(0요일) 00:00 현재 -

## □ 기상상황

- 
- 
- 

## □ 재난상황 처리 현황

### ○ 재난발생 유형별

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난고사	지진	기타
일계	건							

### ○ 메시지 처리

구분	합계	NDMS			F A X				비고
		중앙재대본	행정안전부	군·구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군·구	해양경찰	
일일 집계	계								
	접수								
	발송								

## □ 주요 재난발생 및 조치상황

재난유형	주요발생사항	조치상황	비고

### □ 재난안전 예방활동 사항

부서	제목	예방 활동내용	비고

### □ 주요 언론보도 사항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 □ 군·구 재난상황 훈련

훈련명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5분수신										
문자발송										
재난보고										

#### ※ 군·구 재난상황 훈련 조치결과

#### 작성 방법

1. 일일 재난상황 및 참고자료를 기재하고, 작성서식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고내용이 많을 경우 2-3매 이내로 최대한 간략히 작성, 이외의 사항은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재난안전  
상황실  
☎440-1880~9

[ 0000년 00월 00일(0요일) 00:00 ]

## ■ 기상개황

구분	일자	기상내용	기온(℃)	특이사항
오늘				-
내일				

### ○ 중기 기상전망

예보	00(월)	00(화)	00(수)	00(목)	00(금)	00(토)	00(일)	00(월)
오전								
오후								
기온 (저/고, ℃)								

## ■ 재난안전 상황관리 현황

### ○ 재난안전사고

구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상사고	지진	기타
00건							

### ○ 메시지 처리

구분	계 (건)	NDMS			FAX					기타
		중앙재대본	행정안전부	군·구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군·구	해양경찰	기타	
계										
접수										
발송										

※ 접수·발송: 대설, 강수, 강풍, 풍랑, 너울, 안개 등에 따른 재난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등

## 00000 주관 재난상황보고 훈련

구 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마추출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비고
재난상황메시지 수신											5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15분 이내
긴급재난문자 발송											20분 이내

## 재난안전 주요 활동 상황

부서	제목	내용	비고

## 주요 재난 안전사고 현황

유형	발생개요	피해사항	비고

## 재난안전 관련 주요 언론보도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현행)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결 재	담 당	과 장
. . 00:00 ~ . . 00:00						
등록번호	재난상황과-0000	20 년 월 일( )				
근무자	상황팀장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b>상황근무자 및 점검(보고)사항</b>						
구 분	점검(보고)사항				비 고	
	1차(09:00~18:00)		2차(18:00~익일09:00)			
	받는사람	이상유무	받는사람	이상유무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웅 진 군						
주요인사(간부) 방문 및 특이사항						
지시받은 사항						
<b>재난 상황접수 및 처리결과</b>						
접수일시	건 명			조 치 내 용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안)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결 재	주무관	상황실장	안전상황실장
. . 00:00 ~ . . 00:00							
등록번호	안전상황실-0000						
근무자	상황실장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b>상황근무자 및 점검(보고)</b>							
구 분	점검(보고)사항						비 고
	00:00 ~ 00:00						
	상황근무자			이상유무			
강 화 군							
응 진 군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주요인사(간부) 방문 및 특이사항							
지시받은 사항							
<b>재난 상황접수 및 처리결과</b>							
접수일시	건 명			조 치 내 용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전파”란 법 제18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재난정보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보고: 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보고를 말한다.
  - 나. 통보: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

난관리주관기관의 장애계 재난상황 종합보고 등에 대한 통보를 말한다.

다. 대응지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주관 부서에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필요한 제반활동의 지시를 말한다.

4. “재난·안전관련 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에 관한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이란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원격지 다 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시스템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재해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기관을 말한다

7. “상황실장”이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최고 상급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설치) 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파악,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본부 내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이 상황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무)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관련 정보수집, 상황판단, 보고, 전파 및 종합적 상황과악
2. 재난상황의 보고 및 재난수습부서,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에 신속 전파
3. 재난안전관련 시스템 및 CCTV,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4. 재난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군·구 상황실 근무상황 확인 및 지도
6. 재난·안전관련 시스템(재난관제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운영
7.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지원
8. 그 밖에 재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6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소관부서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상황실의 운영실무에 관하여 시민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상황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리한다.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팀 2교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팀별 인원은 소관부서장이 소관부서 정원 및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상황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대 횟수 및 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비상 근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근무자가 휴가 또는 교육훈련 중인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업무 등 주요사항은 기록과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당직 또는 행사지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후 소관부서 전 직원

을 비상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경보 발령이 있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규모 재난발생이 예측될 경우 등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직원에게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10조(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전파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장 및 소관부서장에게 재난상황 보고를 하고, 수습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에 그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시 관련부서에 전파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전파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구에 대응 지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통신문이나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

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상황보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수시보고: 재난의 중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긴급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보고(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보고의 보고서에는 재난상황을 기재하고, 작성서식 및 내용은 소관부서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의 보고서에는 제목·일시·장소·원인·피해 상황·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군·구 근무자 확인 및 각종 상황보고의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제5장 기록 유지 및 장비관리

제13조(기록 및 관리) ① 상황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기관과 군·구 상황실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상황실 근무자가 실제 활용하는 재난상황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소관부서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 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점검) ① 소관부서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안관리 등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7조(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상황실의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  
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상황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  
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에는 시설 내부의 안전을 위하여 CCTV, 인터폰 등 보안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안강화를 위하여 외부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외부방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입자 통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  
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9조(결원보충)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  
우에는 상황관계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근무환경 조성) ① 소관부서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수칙 (제8조제4항 관련)

상황실 근무자는 각종 재난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는 지휘계통과 소관부서장 및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2.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발생 시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재난수습 부서에 전파한다.
3.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교대시간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전임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업무를 인계·인수 후 근무한다.
4.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재난상황 및 모든 운영장비의 가동 상태에 대한 인계·인수를 정확히 한다.
5.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관제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가동, 운영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8. 상황실 근무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고, 출입 허용 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별표 2]

## 재난안전 상황보고 및 전파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 □ 자연재난

구 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 고
태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하천범람,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 피해발생</li> </ul>	예비 특보
홍수/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호우 주의보
강풍/풍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li>◦ 저지대침수, 고지대 경사지 붕괴 등 피해발생</li> </ul>	
해일/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지역별 별도 지정) 이상이 예상될 때.</li> <li>◦ 기타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li> </ul>	
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태</li> <li>◦ 교통두절, 노후건축물 붕괴 등 위험상황 발생</li> </ul>	대설 주의보
지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청 통보 규모 4.0 이상의 모든 지진</li> <li>◦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li> </ul>	규모 4.0이상
황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ath>\mu\text{g}/\text{m}^3</math>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황사 경보
폭 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최고기온이 35<math>^{\circ}\text{C}</math>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폭염 경보
한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5<math>^{\circ}\text{C}</math> 이상 하강하여 3<math>^{\circ}\text{C}</math>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math>^{\circ}\text{C}</math>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li> <li>◦ 아침 최저기온이 -15<math>^{\circ}\text{C}</math> 이하로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li> <li>◦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li> </ul>	한파 경보

## □ 사회재난

구분	보고 및 전파기준	비고
산불	◦ 「산림보호법」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산림보호법(제36조)
화재/붕괴/ 폭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 기반에서 발생한 사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가축 전염병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발견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발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문화재	◦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수질오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사고	수도법(제7조) 물환경보전법(제16조)
유·도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인명사고	◦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사망	
화학사고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싱크홀	◦ 폭 1.0m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항공기 사고	◦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가스 유출	◦ 다량의 가스 유출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고	
기 타	◦ 단일 사고 사망 3명 이상(화재 및 교통사고의 경우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재난안전  
상황실

☎440-1880~9

[ 0000년 00월 00일(0요일) 00:00 ]

## 기상개황

구분	일자	기상내용	기온(℃)	특이사항
오늘				-
내일				

### ○ 중기 기상전망

예보	00(월)	00(화)	00(수)	00(목)	00(금)	00(토)	00(일)	00(월)
오전								
오후								
기온 (저/고, ℃)								

## 재난안전 상황관리 현황

### ○ 재난안전사고

구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난고	지진	기타
00건							

### ○ 메시지 처리

구분	계 (건)	NDMS			FAX				기타	
		중앙재대본	행정안전부	군·구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군·구	해양경찰		기타
계										
접수										
발송										

※ 접수·발송: 대설, 강수, 강풍, 풍랑, 너울, 안개 등에 따른 재난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등

## 00000 주관 재난상황보고 훈련

구 분	강화	옹진	종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비고
재난상황메시지 수신											5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15분 이내
긴급재난문자 발송											20분 이내

## 재난안전 주요 활동 상황

부서	제목	내용	비고

## 주요 재난 안전사고 현황

유형	발생개요	피해사항	비고

## 재난안전 관련 주요 언론보도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보고선:

보고일시: 2019.00.00(요일).00:00

제목 :

일 시:

장 소:

상황 개요(사고 원인)

피해상황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재산피해

그 밖의 피해

응급조치 사항

조치사항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지원 및 협조사항

향후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결 재	주무관	상황실장	안전상황실장
. . 00:00 ~ . . 00:00							
등록번호	안전상황실-0000						
근무자	상황실장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b>상황근무자 및 점검(보고)</b>							
구 분	점검(보고)사항						비 고
	00:00 ~ 00:00						
	상황근무자			이상유무			
강 화 군							
용 진 군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주요인사(간부) 방문 및 특이사항							
지시받은 사항							
<b>재난 상황접수 및 처리결과</b>							
접수일시	건 명			조 치 내 용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정기점검 관리대장**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백업시스템   방송및음향설비(영상회의)   S/W

장비명	수량	모델명	점검일시
-----	----	-----	------

점검결과	정상	경고	위험(치명)	장애	지연	기타

## 1. 점검항목

○

-

## 2. 점검방법

○

-

## 3. 점검상태 및 내용

○

-

## 4. 조치사항

○

-

## 5. 특이사항

○

-

##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시스템 특성에 따라 양식변경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굴포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계양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267-4번지, 서운동 98-26번지, 121-3번지 외 25필지
  - 면 적 : 영구 6㎡ 일시 50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침수우려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 내 역 : 자동차단시설기 3대, CCTV 3대
5. 점용기간 : 2024.04.05. ~ 2029.04.04.
6. 공사기간 : 2024.04.05. ~ 2029.05.14.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3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계양구보건소장(감영병관리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3 (계산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50
  - 면 적 : 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위생해충 기피제분사기 설치
  - 내 역 : 위생해충 기피제 분사기(20 l) 1식
5. 점용기간 : 2024.04.05. ~ 2024.12.31.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04.30.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공고 제2024-23호

공인등록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4 년 4월 5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